

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219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0월 06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(주)동성엔지니어링(이상규)

나. 전화번호 : 02-2041-8500

2. 명칭 : 스마트폰을 이용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결합손상 정밀평가 가능 스마트 외관조사 진단기술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> 토목구조물 보수보강(포장 보수제외) >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

<기술의 요지>

균열 측정 전용 앱이 설치된 IOS용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균열부를 촬영하면, 실시간 자동으로 균열 폭을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약 4초 이내 점검자에게 전송하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.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자동으로 클라우드서버로 전송하면 클라우드서버에서 영상분석기법을 이용하여 3차원 촬영 각도 보정을 통해 외곡된 이미지를 보정 후 균열의 폭을 산출하여 약 4초 이내 스마트폰으로 결과를 송출하는 기술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균열 폭 0.1mm, 오차범위 $\pm 0.03\text{mm}$ 정밀도로 측정 가능하다.

<범위>

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부를 균열 측정 전용 앱이 설치된 IOS용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균열부 사진을 촬영하고, 클라우드 서버에서 영상분석기법을 이용하여 3차원 촬영 각도 보정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최소 폭 0.1mm, 오차범위 $\pm 0.03\text{mm}$ 이내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외관조사 진단 기술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54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